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7.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7. 15.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 7. 16.

다. 상정일자 : 제23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9. 7.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가. 제안이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추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3)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4)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5)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검토보고 (최종익 전문위원)

(1)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

-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5.0%(2016년 기준)로, OECD 평균(14.5%)의 3배에 해당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무엇보다 2009년 이후 노인 빈곤율이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을 기점으로 하향세로 접어드는 것은 다행이나 여전히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표 1〉 한국 노인 빈곤율 (단위 : %)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노인빈곤율	47.0	47.2	48.6	48.5	49.6	48.8	44.3	45.0	43.6

(출처: OECD)

- OECD 자료에서도 한국의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이 31.51%(2017년 기준)로 OECD 평균 14.78% 보다 약 2.1배 높은 수준으로서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2018년 기준 32.2%, 1위 아이슬란드 38.1%)로 나타났음.

〈표 2〉 한국 노인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제활동 참가율	30.34	29.67	29.72	30.69	31.21	31.78	31.12	31.27	31.51

(출처: OECD)

(2) 노인 일자리정책의 필요성

- 노인 빈곤율 개선을 위해 신체적 근로능력이 있으며 뚜렷한 근로의지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에게 취업을 위한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노인의 취업욕구와 빈곤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2017년 마포구의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항목 조사²⁾에 대한 응답결과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에 이어 ‘노인 일자리 제공’을 2순위(8개 항목 중 18.2%)로 파악되는 등 상대적으로 노인 일자리 제공의 필요성이 높았음.
- 마포구 60세 이상에서 가장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조사³⁾에서도 ‘취미, 여가, 건강관련 교육’에 이어 2순위(9개 항목 중 10.6%)로 ‘직업능력교육’으로 조사되는 등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마포구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4년 11.96%에서 2019년 6월 기준으로 13.69%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한국 노인 인구 또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18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⁴⁾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⁵⁾하고 있어 노인 일자리 대책이 절실하다고 판단됨.

〈표 3〉 마포구 연도별 인구 추이 (단위 : 명, %)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6
인 구 수	395,830	398,351	390,887	385,783	375,077	374,422
65세 이상 수	47,360	48,598	48,303	49,615	50,544	51,279
65세 이상 비율	11.96	12.19	12.35	12.86	13.47	13.69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마포구 행정포털)

〈표 4〉 한국 노인 인구

년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65세 이상 비율 (%)	12.4	12.8	13.2	13.8	14.3	14.9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 출처: 2017 마포구 사회조사보고서(대상자: 60세 이상, P234)

3) 출처: 2017 마포구 사회조사보고서(P147)

4) 유엔 등 국제기구는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5) 출처: 포털 ‘다음’ (주)천재교육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87087>)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양천구, 광진구 등 13개 구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 따라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3) 조례조문 주요내용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으로는 구청장에게 정책 발굴과 일자리 창출 노력의 책무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 수립·시행, 평생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정보 제공과 노인 일자리와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사업 수행기관의 위탁과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사업 참여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의 추진계획 수립과 제6조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제7조의 생산품 우선 구매 그리고 제8조의 노인 일자리 사업의 운영과 제9조의 보험가입 및 제10조의 재정지원 등의 주요 조문은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6)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7)에 근거한 바, 전체적 조례 체계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인일자리 발굴과 지원으로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소외감으로부터 벗어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토대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6)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